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8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하고 기금관리비가 감소함에 따라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2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2,999백만원 증가(6,583백만원 → 9,582백만원)하였음
  - 전세주택 보증금 집행잔액(2,497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(269백만원), 민간융자금 회수 증가(215백만원), 기본경비 잔액(18백만원) 발생

나. 2023년부터 공모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통합시행됨에 따라, 사업컨설팅 비용 등 '기금관리비' 소요액이 21백만원 감액되었으며, '여유자금 예치'가 3,020백만원 증가하였음

※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미편성(일반회계 이관) : 7억원('22년) → 미편성('23년, △7억원)

다. 이에,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 3,020백만원 (131.5%), 기타 감액 21백만원(△51.2%)이 발생하였음

[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, %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<b>총 계</b>	<b>9,737</b>	<b>12,736</b>	<b>2,999</b>	<b>30.8</b>
세 외 수 입	177	177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77	177	-	-
이 자 수 입	177	177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9,560	12,559	2,999	31.4
보 전 수 입 등	8,845	11,844	2,999	33.9
용 자 금 원 금 수 입	2,262	2,262	-	-
예 치 금 회 수	6,583	9,582	2,999	45.6
내 부 거 래	714	714	-	-
예 탁 금 및 예 수 금	714	714	-	-

[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계 획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<b>총 계</b>	<b>9,737</b>	<b>12,736</b>	<b>2,999</b>	<b>30.8</b>
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	7,400	7,400	-	-
장애인단체및사업지원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7,400	7,400	-	-
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	7,400	7,400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296	5,315	3,020	131.5
보전지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여유자금예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기타	41	20	△21	△51.2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41	20	△21	△51.2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41	20	△21	△51.2

### Ⅲ. 검토의견

-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29억 9,900만원)와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30억 2,000만원)는 증액하고, 행정운영경비(△2,100만원)는 감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  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 - 동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131.5%, 30억 2,0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**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** 또한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51.2%, △2,100만원 감액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 C=B-A )	증 감 륜 ( D=C/A )
지 출 합 계	9,737	12,736	2,999	30.8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2,296	5,315	3,020	131.5
보 전 지 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여 유 자 금 예 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,296	5,315	3,020	131.5
행 정 운 영 경 비 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41	20	△21	△51.2

※ 자료근거 :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  
②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2. 5.25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수·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2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 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